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한 통상변화대응 지원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83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상변화대응 지원범위에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 포함	2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판로 개척 지원	9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통상변화대응 지원범위에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 포함

개정안은 동 법률의 목적 및 통상변화대응 지원기준과 관련된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외국과 체결한 조약 등뿐만 아니라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 <u>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	제2조(정의) ----- -----.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u> -----

현행	개정안
<u>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u><신 설></u> 2. 3. (생략)	----- -----. 가. 「<u>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 2. 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정부가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을 예방·극복·최소화하기 위한 ‘통상변화대응’(제2조제2호)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통상피해를 최소화·극복하기 위한 ‘통상피해대응’(제2조제3호)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이 중 ‘통상피해대응’ 정의 및 지원규정(참고자료 참조)은 2022년 4월 개정법률²⁾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미국·EU 등 해외사례와의 형평성³⁾을 감안하여 기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임.

[표 2] 통상변화·피해대응(舊무역조정지원) 제도 변천

구분	'06. 4월	'07. 12월	'12. 1월	'16. 1월	'21. 10월	'25. 1월
법률 명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피해 원인	FTA 이행				- FTA 이행 - <u>통상환경 급격한 변화</u>	- 통상협정 등 이행 - <u>통상환경 급격한 변화</u>
대상 업종	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적용 협정	자유무역협정					통상협정 등 (FTA + α*)

주: * 최근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중심의 FTA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공급망 대응·포괄적 협력 요소 등이 반영된 형태의 ‘통상협정’ 추진 중

예) 디지털협정(DEPA, D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일부개정]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590호)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 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는 통상환경이 FTA 등 통상협정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은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검토에 착수하여 3월 품목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를 시행하고, 4월 상호관세 부과(한국 25%)를 예고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기업이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3항4)에 따라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5% 이상 감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소하였거나, 감소할 예정이라는 통상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개별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조속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 무역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국가의 무역·통상조치를 통상변화대응지원 제도 내에 포함하여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전적·예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통상조약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르면 ① 법령의 제·개정이나 ② 법령에 따른 관세 인상, 환경기준 신설·강화 등의 무역·통상 관련 제도·기준의 변경뿐만 아니라 ③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단순 통관지연, 검사강화 등의 집행·운영상 행정조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와 같이 단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별로 경중 및 내용상 편차가 커서 지원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엄격해져 피해가 확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상피해대응 제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외국의 통상조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존 정의 규정은 통상조약 외에 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를 포괄하고자 ‘통상조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타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는 기존 국제적 합의 개념과 범주가 상이하므로, 이를 ‘등’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상조약 등’ 용어에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포함하기 보다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판로개척 지원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통상조약 및 타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7),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9),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1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준용⁵⁾하여 지원하도록 함.

즉,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는 주로 기업 역량 강화 및 유동성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국가가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출액 감소나 시장접근성 저하와 같은 피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유통망 확보, 홍보·판매 지원 등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통상조약 및 타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고자 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차질에 따른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2개의 동법 개정안⁶⁾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로확보 지원사업 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6) ① 의안번호 제2214205호, 2025. 11. 1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② 의안번호 제2214683호, 2025. 11. 28.,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표 4] 개정안별 판로개척지원사업 규정 비교

구 분	송재봉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형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지원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3. 국내외의 거래 알선 과 상품 홍보를 위 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

문 의 처

02)6788-545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입지(立地)·해외진출 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삭제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9조의2 삭제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